

# 성북구 건강가정·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심사보고서

2021. 9. 16.목  
보건복지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1. 08. 23. 성북구청장 제출(의안번호 369호)

나. 회부일자: 2021. 08. 26.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28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【2021. 09. 08. 상정·원안가결】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민지선 복지문화국장)

가. 제안이유

- 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가족의 유형별로 이원화 되어 있는 가족지원서비스를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한 곳에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,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 및 자녀 교육·상담, 통·번역 및 정보제공, 역량강화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사회·경제적 자립지원을 도모하는 시설로
- 「성북구 건강가정·다문화가족 지원센터」 운영 및 「아이돌봄사업」을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함으로써 민간의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업 능률성을 제고하고자
-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대상 사무의 기준 등) 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(재위탁)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## 나. 주요내용

### ○ 위탁대상 현황

#### 1) 성북구 건강가정·다문화가족 지원센터

##### · 사업내용

-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교육·상담·문화 등 다양한 통합서비스 제공
-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통합서비스 지원
- 우리 구 맞춤형 저출산 극복 대응 사업의 기획·운영·확산의 허브 역할
- 결혼·임신·출산·보육·돌봄·교육·건강·일자리·주거 등 생애주기별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거점 역할

#### 2) 아이돌봄사업

##### · 사업내용

-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제공
-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

### ○ 위탁기간

- 성북구 건강가정·다문화센터 위탁계약 체결일로 부터 5년 이내
- 아이돌봄사업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

### ○ 위탁방법 : 선정심의위원회 적격심의 후 선정

### ○ 수탁자격 : 사회복지법인, 비영리법인, 비영리민간단체

-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사업,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
- 고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학교
-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사회복지법인

- 공익법인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공익법인
-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의한 건강가정사업, 다문화가족지원  
관련 비영리단체

○ 위탁사무의 범위

-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 상담 및 치료
-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
- 구 단위의 가정생활 문화운동 및 지역사회 가정 관련 정보 제공  
(‘성북 온가족 행복망’ 운영 등)
-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·상담·정보제공 및 홍보 등 다양한 생활지원 사업
- 다문화가족 지원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서비스 연계
- 가족폭력, 가족 해체 등 가족 위기보호 및 방지 사업
- 우리 구 지역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개발·운영
- 별도예산에 의한 센터 추진사업 (아이돌봄지원사업, 공동육아나눔터 등)

**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** (전문위원: 김동성)

가. 동의안의 개요

- 본 동의안은 성북구 건강가정·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사업  
운영에 관한 사무를 계속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「서울특별시  
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(이하“민간위탁 조례”라 함) 제4조  
제3항에 따라 성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‘건강가정·다문화가족 지원센터’의 위탁기간 및 ‘아이돌봄사업’의  
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 
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선정심사위원회  
적격 심사를 거쳐 민간위탁자를 선정하려는 것이며, 위탁계약일로

건강가정·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5년 이내, 아이돌봄사업은 3년 이내로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임.

- ‘건강가정·다문화가족 지원센터’는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 방침에 따라 2017년부터 통합 운영하는 시설임.
- 민간위탁하려는 ‘성북구 건강가정·다문화가족 지원센터’운영에 관한 사무 내용과 위탁현황은 다음과 같음.
  1.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 상담 및 치료
  2.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
  3. 구 단위의 가정생활 문화운동 및 지역사회 가정 관련 정보 제공  
(‘성북 온가족 행복망’ 운영 등)
  4.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·상담·정보제공 및 홍보 등 다양한 생활지원 사업
  5. 다문화가족 지원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서비스 연계
  6. 가족폭력, 가족 해체 등 가족 위기보호 및 방지 사업
  7. 우리 구 지역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개발·운영
  8. 별도예산에 의한 센터 추진사업 (아이돌봄지원사업, 공동육아나눔터 등)

### 〈위탁현황〉

소재지	시설현황(㎡)	연간사업비	위탁기간	운영주체	운영조직
안암로 145 (고려대학교 평생교육원 102호)	126㎡	총계 3,378,747천원 (국비) 821,155천원 (시비) 1,567,244천원 (구비) 990,348천원 -인건비 : 935,999,270원 -운영비 : 112,786,040원 -사업비 : 2,329,961,690원 ※ 2021년 예산 기준	2019. 1. 1. ~ 2021. 12. 31. (3년)	학교법인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	센터장 포함 28명
정릉로27길 61-6(성북온가족 행복 지원센터)	대지 235㎡ 연면적 382.14㎡ (지상4층)				

#### 다.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적정성

-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35조<sup>1)</sup> 및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」 제9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 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하도록 하고, 민간기관에 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12조<sup>2)</sup> 및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」 제1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고,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‘건강가정·다문화가족 지원센터’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은 그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음.

#### 라. 위탁기간 및 수탁자 선정방법의 적정성

- ‘건강가정·다문화가족 지원센터’의 동의안 명시된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 이내로, 종전 3년 이내 보다 확대되었음. 이는 「사회 복지사업법」의 개정으로 ‘건강가정지원센터’가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됨에 따른 것으로 보이나,

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의2제2항<sup>3)</sup>에 따르면 ‘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’고 규정 하고 있어 위탁기간을 5년 이내가 아닌 5년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됨.

- 
- 1)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35조(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·상담 및 치료,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, 가족문화운동의 전개,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  - 2)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12조(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 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  - 3)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

- 아이돌봄사업은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있음. 이는 「아이돌봄 지원법」에 위탁기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「민간위탁 조례」 제10조제2항<sup>4)</sup> 및 여성가족부 「2020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」에서 재지정 유효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한데 따른 것으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.
- 수탁기관 선정은 선정심의위원회 적격 심의를 거쳐 선정하려는 것으로 적합하다 사료됨.

#### 마. 종합의견

- 이상을 종합해 보면 본 동의안은 「건강가정기본법」 및 「다문화가족 지원법」, 「민간위탁 조례」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된 동의안이며,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고 있는 바, 본 민간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---

4)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10조(계약체결 등)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상위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

**4. 질의 및 답변요지 : 회의록 참고**

**5. 토론요지 : 회의록 참고**

**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**

**7. 소수의견 요지: 없음**

**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**